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9717호 2020. 3. 25.(수)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783호(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871호(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4
○행정안전부령제17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5
○행정안전부령제174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7
○교육부령제205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7
○국토교통부령제710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7
○보건복지부령제716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7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0-4호(한·인도네시아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사증면제협정 일시 정지)…… 8
○법무부고시제2020-81호(국적회복)…… 8
○국방부고시제2020-7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8
○국방부고시제2020-9호(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37호(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25
○환경부고시제2020-58호(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7
○산림청고시제2020-19호(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폐지) …… 28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1호(귀석취득)…… 28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3호(국적상실)…… 28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4호(국적상실) …… 30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6호(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31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8호(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3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8호(하천점용 허가)…… 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9호(하천점용 허가〈변경〉) …… 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0호(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 3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2호(하천점용 허가) …… 3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6호(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 38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044)205-1492, 205-1493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를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조요청사항"을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을 "위원회는 제4조제1항"으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을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주체 및 심의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되며, 위원회 소집사유를 종전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에 대한 견의가 있는 경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로 조정하는 한편, 회의 결과의 통지 대상을 종전의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해당 질의를 한 내국인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17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8의2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제14조의2 관련)

기준	평가 방법
1. 교통사고 위험지수 (ARI: Accident Risk Index)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피해 사고 건수 및 사망자·중상자 수
2. 사고 유형	차대 사람, 차대 자전거 사고 건수
3. 사고 원인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
4. 보행 조건	가. 보도와 차도 구분 여부 나. 횡단보도 보행신호 설치 여부 다.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물(보도용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설치 여부
5. 도로 조건	가. 과속방지를 위한 시설물(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등) 설치 여부 나. 도로구조 상 운전자 시야 확보 유무 다.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여부 라. 도로 폭, 차로 수 등 도로여건에 따른 위험도
6. 그 밖의 기준	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요구 민원의 빈도 나. 지역주민 여론수렴 결과 다. 현장여건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라. 그 밖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등

비고

1.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위 표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른 사고건수, 사망자·중상자 수 및 위반 건수는 최근 3년간(조사 연도는 제외한다) 발생한 어린이 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3. 위 표 가목의 교통사고 위험지수(ARI)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sqrt{KSI^2 + \text{사고건수}^2} \,/\, \text{년}$$

※ KSI(Killed or Seriously Injured, 사고심각성 대표 지표): 사망자 수+중상자 수

※ 사고 건수: 인명피해사고 건수

4.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위 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및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 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 유형, 사고 원인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곳으로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174호

◉교육부령 제205호

◉국토교통부령 제710호

◉보건복지부령 제716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교 육 부 장 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장관 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어린이·노인"을 "노인"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설치 장소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